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검 토 보 고

I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2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II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III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○ 관련서류 : 2022회계연도 결산서(안)

IV. 문화환경국 결산

1. 문화환경국 결산 총괄

가. 세입 총괄

(단위: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 (B/A)
계	17,040,181,000	16,556,220,740	16,124,129,370	97.3%
문화체육과	9,372,428,000	7,419,691,850	7,413,841,850	99.9%
청소행정과	7,123,448,000	8,147,674,730	8,088,732,870	99.2%
환경과	454,105,000	494,265,220	485,896,220	98.3%
부동산정보과	90,200,000	494,588,940	135,658,430	27.4%

나. 세출 총괄

(단위:원)

부서명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
				금액	집행률 (B/A)
계	66,227,904,810	54,354,058,460	6,702,634,700	4,950,367,372	82.0%
문화체육과	26,268,358,060	18,397,602,316	5,926,347,300	1,804,781,534	70%
청소행정과	37,596,263,750	33,910,306,864	620,800,000	3,040,002,706	90.1%
환경과	2,066,093,000	1,775,308,250	155,487,400	79,234,162	85.9%
부동산정보과	297,190,000	270,841,030		26,348,970	91.1%

다. 집행잔액

(단위: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집행잔액	사유별		
			보조금 정산잔액	예산절감액	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
			낙찰차액	지출잔액	예비비
계	66,227,904,810	4,950,367,372	83,214,020	0	171,490,680
			198,361,235	4,497,301,437	0
문화체육과	26,268,358,060	1,804,781,534	47,412,771	0	45,259,680
			176,967,410	1,535,141,673	0
청소행정과	37,596,263,750	3,040,002,706	31,842,141		122,015,000
			15,637,780	2,870,507,785	
환경과	2,066,093,000	79,234,162	3,959,108		800,000
			5,756,045	68,719,009	
부동산정보과	297,190,000	26,348,970			3,416,000
				22,932,970	

라. 집행률 저조사업

(단위:원)

부 서 명	세부사업명	예산액(가)	지출액(나)	이월액(다)	집행잔액 (가-나,다)	집행률 (나/가)
문 화 체 육 과	계	8,744,388,000	2,167,942,100	5,809,272,700	767,173,200	25%
	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	1,000,000,000	0	1,000,000,000	0	0%
	학교운동부 체육용품 지원	6,400,000	0	0	6,400,000	0%
	가산도서관 생활 SOC 리모델링 추진	2,100,000,000	31,330,500	2,068,199,500	470,000	1%
	박미빛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	607,000,000	23,496,000	583,504,000	0	4%
	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	1,814,974,000	272,616,300	1,518,695,920	23,661,780	15%
	소셜믹스형 예술인주택 운영	2,500,000	494,000	0	2,006,000	20%
	문화산업 관리	9,590,000	2,476,800	0	7,113,200	26%
	금천문화 거점공간 조성	632,517,000	196,696,000	435,623,000	198,000	31%
	금천 대표도서관 건립	50,000,000	20,370,000	28,730,000	900,000	41%
	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운영	16,500,000	7,072,780	0	9,427,220	43%
	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	9,440,000	4,164,340	0	5,275,660	44%
	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	27,200,000	14,344,700	0	12,855,300	53%
	독산 어르신 체육센터 운영	87,708,000	46,516,220	0	41,191,780	53%
	금천베이스볼파크 운영	20,940,000	13,187,790	0	7,752,210	63%
	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	1,694,819,000	1,093,216,180	10,052,900	591,549,920	65%

문화체육과	축구교실 운영	63,600,000	41,203,270	0	22,396,730	65%
	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(서울 호암산성 제2우물지 및 건물지 발굴조사)	601,200,000	400,757,220	164,467,380	35,975,400	67%
청소행정과	계	435,545,000	180,682,000	133,000,000	121,863,000	41%
	대형생활폐기물 처리	155,145,000	94,585,630	0	60,559,370	60%
	동네방네 쓰레기 -Out 아카데미 운영	4,880,000	2,772,890	0	2,107,110	56%
	주민과 함께하는 청결도시 금천 조성	32,320,000	22,123,600	0	10,196,400	68%
	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	171,200,000	33,847,070	133,000,000	4,352,930	19%
	빈 용 기 신 고 보 상 제	300,000	0	0	300,000	0
	RFID 종량기 설치 및 대형감량기 설치	71,700,000	27,352,810	0	44,347,190	38%
환경과	계	260,588,000	87,958,140	151,600,000	13,099,140	33%
	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	229,182,000	69,651,280	151,600,000	7,930,720	30%
	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정수	31,406,000	18,306,860	0	13,099,140	58%
부동산정보과	계	42,086,000	22,190,000	-	19,896,000	52%
	부동산통합민원 창구운영	560,000	-	-	560,000	0%
	중개업소 관리	870,000	-	-	870,000	0%
	기본경비	40,656,000	22,190,000	-	18,466,000	54%

※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(집행률 70% 미만 사업)

3. 예산의 전용

(단위: 천원)

구분	부서별	건수	금 액	사유
계		6	243,663	
전용	문화체육과	1	4,000	-시흥행궁전시관 개관 연기에 따라 불용예정인 예산 일부를 정조행사비로 변경사용하고자 함
	청소행정과	5	239,663	-2022년 환경공무원 휴게실 개선사업 매칭 사업비 확보에 따라 부족분을 구비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 전용 -22년도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과다 지출, 청소 차량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

4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	명시이월		사고이월	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29	6,702,634	19	5,436,909	10	1,265,725
문화체육과	21	5,926,347	14	4,816,109	7	1,110,238
청소행정과	5	620,800	5	620,800		
환경과	3	155,487			3	155,487

5. 기금 결산

(단위:원)

구 분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
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계	779,228,236	32,591,657	50,873,477	44,596,840	785,504,873
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	489,708,735	△13,157,510	24,509,290	37,666,800	476,551,225
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	289,519,501	19,434,147	26,364,187	6,930,040	308,953,648

V. 검토의견

1. 세입·세출 결산

- 2022회계년도 문화환경국 세입 결산액은 161억 2,41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징수율 97.3%임.
- 세출 결산액은 534억 5,40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2%이며,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263만원이며,
- 집행잔액은 총 49억 5,036만원으로
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8,321만원, 낙찰차액 1억 9,836만원, 지출잔액 44억 9,730만원,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,149만원임.

2. 예산의 전용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 규정에 따른 문화환경국의 예산전용은 총 6건 2억 4,366만 3천원을 예산 전용하였음.

3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-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,
 - 명시이월은 총 19건 54억 3,69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.
 - 사고이월은 총 10건 12억 6,572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.

4. 기금 결산

- 문화환경국 소관 운용 기금은 2개이며 결산내역은
 -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7,922만원이며

- 당해연도 증감액은 3,259만원이며
-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 8,550만원임.

5. 검토 의견

- 2022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세입·세출 결산 검토 결과,
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, 부서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및 성과 등에 충분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☞ 예산·결산 자료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3. 6. 7.] [법률 제19428호, 2023. 6. 7., 일부개정]

제150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49조(예산의 전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타법개정]

-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6.>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☞ 기금 관련 자료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